

# 이-베리파이 (E-Verify®)란 무엇입니까?

#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모든 신규직원(미국 시민권자 포함)의 신분과 고용자격을 채용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연방법상 요구됩니다.

고용주들은 I-9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고용인들은 신분과 미국내에서 일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고용주들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SSA)은 이-베리파이(E-Verify)라고 불리는 전자적 시스템을 설치해 고용주들이 모든 신규직원들의 고용자격을 확인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베리파이(E-Verify)를 통해, 고용주들은 당신의 I-9 양식상의 정보를 사회보장국과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토안보부에 보내서, 당신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으며 당신의 이름, 사회보장 번호, 그리고 출생일이 정부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의 고용주가 이-베리파이(E-Verify)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신에게는 고용인으로서 특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인 신분 확인.  완료.

이-베리파이(E-Verify)하에서의  
당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www.dhs.gov/E-Verify](http://www.dhs.gov/E-Verify)

신속 • 무료 • 간단 • 안전  
(888) 897-7781



이-베리파이(E-VERIFY)로 고용주가 당신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때 당신에게 있는 권리와 의무

- 채용된 후, 새 업무를 시작하고 고용자격 확인서인 I-9 양식 상의 제 1 절을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3일 안에, 당신은 고용주에게 당신의 신분과 고용자격을 입증하는 (I-9 양식에 게재된 대로의) 합법적인 서류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 당신의 고용주가 이-베리파이(E-Verify)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어떤 서류들을 선택할 것인가는 당신의 권리이며 여기에는 단 한 가지의 예외만 있습니다. 그 예외는 이-베리파이(E-Verify)에 참여하는 고용주에게, 당신이 B 리스트 상의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보가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 당신의 고용주가 이-베리파이(E-Verify)를 통해 당신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나서, 임시적 비확인(TNC)라고 알려진, 불일치 결과를 통보 받으면, 당신의 고용주는 즉시 당신에게 임시적 비확인이라는 서면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당신이 이 임시적 비확인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원하는지 당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 당신이 임시적 비확인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를 접촉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공하는 추천서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고용주는 임시적 비확인 통지서와 추천서 모두에 서명해야 합니다.

임시적 비확인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신의 일 할 권리

- 당신이 임시적 비확인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당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해고, 직무 정지, 임금 억류나 훈련 동결, 기타 당신의 고용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임시적 비확인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적합한 연방 기관을 접촉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연방정부 업무일 기준으로 8일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 당신이 연방 정부 업무일 기준으로 8일 안에 적합한 연방기관을 접촉하는 한, 임시적 비확인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비록 이 기간이 연방 정부 업무일 기준으로 10일이 넘는 경우라도), 고용주는 이 임시적 비확인에 근거해 당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주가 이-베리파이(E-Verify)의 사용을 통해서, 혹은 I-9 양식을 작성할 때, 고용, 해고, 사례비를 요구하는 모집 혹은 추천과 관련하여, 당신의 출신 국적이나 시민권 여부 또는 이민 상태 때문에 당신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법무부 인권국 이민 관련 불공정 고용관행 담당 특별법무관 사무실 1-800-255-7688 (청각장애자용 번호: 1-800-237-2515) 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베리파이(E-Verify)에 참여하는 동안의 당신의 고용주의 역할과 의무

- 고용주는 이-베리파이(E-Verify)를 이용한다는 것을 고용인들에게 알리는 통지문과 차별대우 반대 포스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 특정한 연방정부 계약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베리파이(E-Verify)는 오직 신규직원만을 대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의 고용자격을 확인하는 데는 이-베리파이(E-Verify)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베리파이(E-Verify)는 출신 국적이나 시민권의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이-베리파이(E-Verify)는 고용인이 고용되고 나서 I-9 양식을 작성한 다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이-베리파이(E-Verify)를 통해서 지원자들을 사전 조사할 수 없습니다.

\* 연방 취득 규정 이-베리파이(E-Verify) 조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구하려면, [www.dhs.gov/E-Verify](http://www.dhs.gov/E-Verify) 를 방문하십시오.

